



통보

개정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<p>1. <b>통보국가:</b> <u>우크라이나</u></p> <p>해당되는 경우, <b>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</b></p>
<p>2. <b>담당기관:</b></p> <p>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절약청</p>
<p>3. <b>근거 조항</b>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 ], 제 5.6.2 조 [X], 제 5.7.1 조 [ ], 제 3.2 조 [ ], 제 7.2 조 [ ], 기타:</p>
<p>4. <b>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</b> 가솔린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(즉, 부피 기준 생물성분이 10% 이상 포함된 자동차 연료(자동차 가솔린)); 디젤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(즉, 부피 기준 지방산의 메틸 및/또는 에틸 에스테르가 7% 이상 포함된 자동차 연료(디젤 연료))</p>
<p>5. <b>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</b> “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”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; (15 페이지, 우크라이나어)</p> <p><b>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</b></p> <p>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0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0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1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1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2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2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3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3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4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4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5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5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6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6_x.pdf</a> 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7_x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KR/25_05214_07_x.pdf</a>  <a href="https://sae.gov.ua/npas/proekty-npa">https://sae.gov.ua/npas/proekty-npa</a></p>

<p>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 무역협정부  12/2 Hrushevskoho Str.  Kyiv 01008  전화: +(38 044) 596 6839  이메일: <a href="mailto:ep@me.gov.ua">ep@me.gov.ua</a>  웹사이트: <a href="https://www.me.gov.ua">https://www.me.gov.ua</a></p>
<p><b>6. 내용:</b> 본 결의안은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동차 대체연료 요구사항의 기술규정;</li> <li>- 2016년 12월 28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 1069호에 의해 승인된 국가 시장 감시 기관의 국가 시장 감시 대상 제품 유형 목록에 대한 개정안.</li> </ul> <p>본 기술규정은 자동차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체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. 여기에는 자동차 대체연료의 시판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조항 그리고 5개의 부속서가 포함된다.</p> <p>이전 기술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개정된 버전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최신 조항을 포함하며, 수소처리된 식물성오일(HVO) 요구사항, 지방산 메틸에스테르(FAME)의 특성, 관련 표준에 따른 B100 바이오디젤의 품질과 관련된 기존 기술규정 부속서는 제외되었다.</p> <p>이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자동차 대체연료의 시장 출시와 공급이 허용된다.</p> <p>시장에 출시된 자동차 대체연료의 라벨링은 본 기술규정의 부속서 1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가솔린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는 기술규정 부속서 2에 명시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</p> <p>디젤 엔진용 자동차 대체연료는 기술규정 부속서 3에 명시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</p> <p>본 기술규정은 “대체연료에 관한” 우크라이나 법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, 재생에너지원 사용 촉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(EU) 2018/2001, 이사회 지침 93/12/EEC를 개정하는 휘발유 및 디젤 품질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/70/EC, 휘발유, 디젤, 경유의 규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 및 저감 메커니즘 도입에 관한 지침 98/70/EC를 개정하고 내륙 수로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규격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/32/EC를 개정하며 지침 93/12/EEC를 폐지하는 2009년 4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/30/EC를 고려하였다.</p>
<p><b>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</b> 국가 안보 요구사항; 기만적 관행방지 및 소비자보호; 환경 보호; 품질 요건; 국제표준과의 조화</p>
<p><b>8. 관련 문서:</b></p> <p>“대체연료에 관한”, “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” 우크라이나 법률</p>
<p><b>9. 채택 예정일:</b> 추후 결정</p> <p><b>시행 예정일:</b> 본 결의는 관보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.</p>
<p><b>10. 의견 제공</b></p>

**의견 마감일:** 2025-10-06

**통보일로부터 60 일 [X]**

**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**

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

무역협정부

12/2 Hrushevskoho Str.

Kyiv 01008

전화: +(38 044) 596 6839

이메일: [ep@me.gov.ua](mailto:ep@me.gov.ua)

웹사이트: <https://www.me.gov.ua>